

제122차(2018학년도 제4회)
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회 회의록

이사정수 8인	재적이사 8인
감사정수 2인	재적감사 2인

1. 일 시 : 2018년 8월 9일(목) 11:00~12:20(회의소집 통보일 : 2018년 7월 31일)

2. 장소 : 성수동 카페성수

3. 참석인원 : 이사 6인 정희경, 박상중, 구성희, 이장우, 임청산, 이선호
감사 2인 장지환

5. 안건 : 제1호안 : 정관변경(안) 심의의 건
제2호안 : 교원징계요구 의결 제청 심의의 건
제3호안 : 2018학년도 제1차 대학 불용물품 처분 심의의 건
제4호안 : 기타 안건

6. 회의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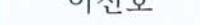
개회기도 : 박상중 이사가 개회기도를 하다.

성원보고: 실무자가 학교법인 이사 8인중 이사 6인과 감사 2인이 참석하여 정관 제28조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학교법인 청강학원 제122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.

전차회의록 채택 : 실무자가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이사장이 채택 여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다
업무 보고 : 실무자는 법인업무에 관하여, 이수형 총장은 학교업무에 관하여 보고하니 전원 찬성으로
접수하다.

제1호 안건 : 정관 변경(안) 심의의 건

간 서 명	박상증	이선호	임청산
			

정희경 이사장 : 1호 정관변경(안) 안건을 상정하고, 실무자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실무자 : 정관변경,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, 평의원회 구성, 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·기능, 정년 등 관련 현황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후 정관 변경 신구대조표를 설명하다.
(신구대조표 붙임자료 첨부)

정희경 이사장 : 전체이사의 의견을 묻고, 임청산 이사의 동의와 이선호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다.

제2호 안건 : 교원 징계 요구 의결 제청 심의의 건

정희경 이사장 :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,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박영철 부총장 : 교원 징계요구 의결 제청 사유는 겸직이 불허되었음에도 외부 영리활동을 계속하여 교원 복무규정 제5조(영리업무의 금지), 5조의2(겸직허가)와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시행지침을 위반하였으며, 징계요구 제청 대상자는 [REDACTED] 라고 설명하다. 징계요구 제청은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음을 부연 설명하다.

실무자 : 징계위원회 구성(안)을 내부위원 4명, 외부위원 1명, 간사1명으로 구성하였다고 설명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교원 징계요구 의결 제청에 관하여 의견을 묻고 안건처리를 요청하니, 임청산 이사의 동의와 이선호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.

제3호 안건 : 2018학년도 제1차 대학 불용물품 처분 심의의 건

정희경 이사장 :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,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.

실무자 : 불용물품 총액은 520,297,098원으로 이중 매각은 161,247,178원, 폐기는 359,049,920원이며 감가상각비는 518,677,914원으로 잔존가액은 1,619,184원이라고 설명하다.

정희경 이사장 : 2018학년도 제1차 대학 불용물품 처분에 관하여 의견을 묻고 안건처리를 요청하니, 박상중 이사의 동의와 임청산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.

간서명대표자선임 : 정희경 이사장이 학교법인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중 3인 이상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, 박상중 이사, 이선호 이사, 임청산 이사를 추천하니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다.

폐회선언 : 정희경 이사장이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임청산 이사의 동의와 박상중 이사의 재청으로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12시 20분이었다.

위의 사실을 확인함.

간 서 명	박상중	이선호	임청산
	[Signature]	[Signature]	[Signature]

2018년 8월 9일

학교법인 청강학원

이사장 정희경

이사 박상증

이사 구성회



이사 임청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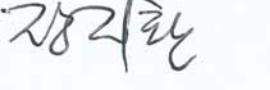
이사 이장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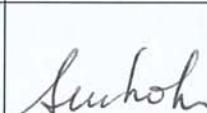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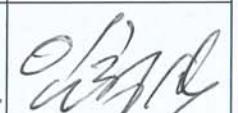


이사 이선호



감사장지환



간서명	박상증	이선호	임청산
			

< 정관 변경 신구대조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정관의 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-----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-----	제5조(정관의 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-----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-----
제24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생 략 ②생 략 ③생 략 ④상근이사는 이사의 <u>호선으로 선출하고 이사장을 보좌한다.</u>	제24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생 략 ②생 략 ③생 략 ④상근이사는 이사의 <u>호선으로 선출한다.</u>
제31조의3(평의원회의 구성 등) ①생 략 ②평의원의 <u>임기는 1년으로 하되</u> , 평의원에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임 치 해촉되며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③생 략	제31조의3(평의원회의 구성 등) ①생 략 ②평의원의 <u>임기는 2년으로 하되</u> , 학생 평의원회의 <u>임기는 1년으로 한다</u> . 평의원에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임 치 해촉되며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③생 략
제31조의4(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)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써 그 자격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교원 5인: 보직교원 및 전임교원 2. 직원 3인: 직원(5년 이상 근속) 3. 학생 1인: 재학생 중 대표 4. 동문 1인: 동문대표 5. 생략	제31조의4(평의원의 자격 및 정수)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써 그 자격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교원 5인 2. 직원 3인 3. 학생 1인 4. 동문 1인 5. 생략
제31조의7(기능)생 략 1. ~ 6. 생 략 7. (신규)	제31조의7(기능)생 략 1. ~ 6. 생략 7.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
제70조(정년)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(5급이상 60세, 6급이하 57세)를 준용한다.	제70조(정년)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.

간 서 명	박상중	이선호	임청산